

재단법인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보수규정

(제정) 2002. 12. 20.
(일부 개정) 2003. 02. 24.
(일부 개정) 2003. 11. 21.
(일부 개정) 2004. 01. 13.
(일부 개정) 2004. 09. 16.
(일부 개정) 2005. 07. 15.
(일부 개정) 2006. 02. 22.
(일부 개정) 2008. 02. 13.
(일부 개정) 2009. 03. 05.
(일부 개정) 2009. 06. 19.
(전부 개정) 2010. 03. 30.
(일부 개정) 2012. 04. 06.
(일부 개정) 2013. 07. 1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구리시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한다)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직원은 당해에 정해진 연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3.07.18.>
2. “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 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개정 2013.07.18.>
3.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개정 2013.07.18.>
4.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로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07.18.>

5.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07.18.>
6. “연봉”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기본 급여의 연액을 말한다.<개정 2013.07.18.>
7. “연봉월액”이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3.07.18.>
8. “연봉의 일할계산”이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07.18.>
9.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직원에게 지급된 보수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 한다
10. “통상임금”이란 직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본호신설 2013.07.18.>

제3조(보수의 책정) 직원의 보수책정은 공무원봉급인상율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 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개정 2013.07.18.>

제2장 호봉획정과 승급

제4조(초임호봉의 획정) 직원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봉급표 [별표1]의 1호 봉을 부여한다. 단, 관장 신규 임용시는 1급 1호봉을 부여한다.<개정 2013.07.18.>

제5조(승진 시의 호봉획정) ① 직원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개정 2013.07.18.>

② 제1항에 따라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은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획정한다.<개정 2013.07.18.>

제6조(정기승급) ① 직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직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따라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직원은 승급 제한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한다. 이 경우 승급제한의 사유 없이 계속근무 하였을 때 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07.18.>

제7조(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개정 2013.07.18.>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한다)중인 사람.<개정 2013.07.18.>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3.07.18.>

- 가. 정직 : 18개월
- 나. 감봉 : 12개월
- 다. 견책 : 6개월

제3장 보수 지급

제8조(보수지급의 방법) ①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한다.

②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 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07.18.>

제9조(보수지급일) ①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한다.<개정 2013.07.18.>

②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일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07.18.>

제10조(보수계산) ① 보수는 신규임용, 승진, 승급, 감봉, 그 밖의 모든 임용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13.07.18.>

제11조(2년 이상 근속한 직원의 월중 면직 등에 대한 봉급지급) 2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면직(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그 달 1일자로 면직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징계처분 기타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결근에 의한 봉급감액을 제외한다)되어 지급 중인 직원에게는 감액된 봉급을 계산하여 그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3.07.18.>

제12조(징계처분기간의 보수 감액) 징계처분에 따른 보수의 감액은 (재)구 리시청소년수련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다.<개정 2013.07.18.>

제13조(결근기간 등의 봉급 감액) ① 결근한 사람으로서 그 결근 일수가 해당 직원의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 일수의 매1일에 대하여 봉급일액의 3분의2를 감하여 지급한다.<개정 2013.07.18.>

② 무급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봉급 일액을 빼고 지급한다.<본항신설 2013.07.18.>

제14조(휴직기간중의 봉급 감액) ① 신체상,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직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80퍼센트를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개정 2013.07.18.>

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않은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본항신설 2013.07.18.>

제15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봉급의 8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이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개정 2013.07.18.>

제4장 수 당

제16조 (상여수당) 상여수당은 기본 급여액의 70퍼센트로 산정하여 매월 보수 지급일에 균등 지급한다. 다만,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17조 (가족수당) ① 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배우자는 월 4만원,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만원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셋째 자녀 이상에게는 가족수당 가산금 월 3만원씩을 지급한다.<개정 2013.07.18.>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당해 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직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 직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 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 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에 한 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개정 2013.07.18.>

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미만의 직계비속 및 20세이상의 직계비속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개정 2013.07.18.>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개정 2013.07.18.>

③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3.07.18.>

1.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6급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 등급 제1급 내지 제7급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4.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6급.<개정 2013.07.18.>
5.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 내지 제6급
 - ⑤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직원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⑥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 ⑦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3】 지급기준표에 따라 가족수당 및 가족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개정 2013.07.18.>

제18조(육아휴직수당) ① 출산 및 자녀양육의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직원에 대하여는 월 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제19조(초과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 25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단, 생활체육팀 계약직 강사는 적용 제외된다.)

② 야간에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야간근무는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무를 말한다.

③ 휴일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무를 실시하도록 한다.<개정 2013.07.18.>

④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4]와 같

다.<개정 2013.07.18.>

⑤ 제1항에서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각 산정된 시간외수당은 당월의 시간외근로에 대한 임금 및 그 가산임금을 포괄하여 산정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정액급식비)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12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21조(교통보조비)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5]의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교통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13.07.18.>

제22조(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는 제 16조(상여수당)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23조(직책급 업무추진비) 직위가 있는 직원에게는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별표6]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13.07.18.>

제24조(직급보조비)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7]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본조신설 2013.07.18.>

제25조(기술수당) 안전관리가 필요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8]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기술수당을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13.07.18.>

제26조(연가보상비) ① (재)청소년수련관복무규정상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개정2013.07.18.>

② 연가보상비는 해당연도 0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의 전일)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징계처분, 휴직 그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지급 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개정 2013.07.18.>

제27조(성과상여금) 근무성적 . 업무실적과 제안실적이 우수한 직원(계약직 포함)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개정 2013.07.18.>

① 성과상여금은 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인별로 차등 지급한다.<개정 2013.07.18.>

②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수련관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 절감을 가져 오거나 행정개선으로 수련관 운영에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연도 또는 그 다음해의 해당회계예산에서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개정 2013.07.18.>

③ 이 경우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 업무실적과 제안실적으로 구분하되 배분비율이 8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지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본항신설 2013.07.18.>

제28조(청소년활동수당) 직원(계약직 포함)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9]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청소년활동수당을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계약직의 경우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년간은 5만원을 지급한다.<본조신설 2013.07.18.>

제29조(장기근속수당) 장기근속직원(계약직 포함)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10]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장기근속수당을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본조신설 2013.07.18.>

제5장 연 봉 제

제30조(연봉제 적용대상) 연봉제 적용 대상 직원은 계약직 직원으로 한다.<개정 2013.07.18.>

제31조(연봉 한계액) 연봉제 적용 대상 직원의 연봉 한계액은 [별표11] 과 같다.<개정 2013.07.18.>

제32조(연봉의 조정) 연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한다.<개정 2013.07.18.>

제33조(연봉의 지급) 연봉은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개정 2013.07.18.>

제34조(연봉의 계산) 연봉제 적용직원의 연봉은 신규임용, 승진, 감봉 등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13.07.18.>

제35조(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월중 면직에 대한 연봉지급)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면직(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을 전액지급한다. 이 경우 징계처분 기타의 사유로 연봉월액이 감액(결근에 의한 연봉의 감액을 제외한다)되어 지급 중인 직원에게는 감액된 연봉월액을 계산하여 그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개정 2013.07.18.>

제36조(징계처분기간의 연봉감액) 징계처분에 따른 연봉월액의 감액은 정직 시에는 70퍼센트, 감봉시에는 4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개정 2013.07.18.>

제37조(결근기간 등의 연봉감액) ① 결근일수가 당해직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연봉일액의 6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개정 2013.07.18.>
②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연봉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38조(휴직기간중의 연봉감액)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

하여 휴직한 직원에게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의 6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의 70퍼센트를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연봉월액을 전액 지급한다.<개정 2013.07.18.>

제39조 연봉제 적용대상자에게는 상여수당, 명절휴가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청소년활동수당, 장기근속수당은 일반직 직원에 준한다.<개정 2013.07.18.>

제6장 퇴직금

제40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수련관은 퇴직하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07.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07.18.>

③ 수련관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3.07.18.>

④ 수련관이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07.18.>

제40조의 1(퇴직급여제도의 미 설정에 따른 처리)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련관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07.18.>

제40조의 2(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수련관은 직원의 퇴직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에 정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07.18.>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련관은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직원이 퇴직하기 전에 당해 직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개정 2013.07.18.>

제41조(퇴직금 계산) ① 퇴직금은 아래 산식에 의해 계산한다.

1일의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일수/365

② 평균임금은 본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근속일수는 입사일로부터 퇴직하는 당일까지 역월상의 일수로 한다.

④ 직원의 원에 의하여 중간정산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중간정산일의 익일을 중간입사일로 한다.<개정 2013.07.18.>

제42조(특이자에 대한 퇴직금액의 계산) 휴직, 정직, 출근정지, 감봉, 유, 무계 결근 및 대기중 퇴직하거나, 퇴직일 이전 3개월 중 위와 같은 사유로 보수가 감액된 월이 있는 경우에는 발령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개정 2013.07.18.>

제43조(근속기간의 계산) 근속기간은 채용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휴직기간의 근속기간 계산은 복무규정에 따른다.<개정 2013.07.18.>

제44조(퇴직금의 지급) ①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07.18.>

② 금고 이상의 형 또는 과면처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45조(퇴직금지급의 특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한 자와 순직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07.18.>

1.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퇴직시 : 퇴직금의 50퍼센트
2. 순직의 경우 : 퇴직금의 100퍼센트

제46조(퇴직금의 지급대상) 퇴직금은 본인이 생존시에는 본인에게 지급하고 사망시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개정 2013.07.18.>

제47조(관계법령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의 업무처리지침등을 준용한다.<개정 2013.07.18.>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12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2월 24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1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01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09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07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02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02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 후 2009년 04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 후 2009년 06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 후 2010년 03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와 제29조는 2012년 1월 1일 임금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와 제31조는 2013년 1월 1일 임금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청소년지도사 자격수당 경과조치) 종전 청소년지도사 자격수당 수령자 중 제29조에 따른 장기근속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직원에 한정하여 근속기간 5년이 도달할 때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수당을 지급한다.

[별표1] <개정 2013.07.18.>

(재)구리청소년수련관 직원 봉급표

(재)구리시청소년수련관 2013년 직원 봉급표						
구분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급
1	1,508,350	1,127,020	1,023,810	920,590	789,660	703,740
2	1,560,730	1,176,990	1,071,380	965,770	830,950	742,770
3	1,610,160	1,227,370	1,120,140	1,013,000	874,500	782,310
4	1,652,850	1,278,150	1,168,180	1,058,230	919,660	824,250
5	1,696,150	1,325,850	1,216,090	1,106,320	966,030	866,890
6	1,737,300	1,368,800	1,261,370	1,151,340	1,012,920	910,040
7	1,776,170	1,412,130	1,302,930	1,194,630	1,060,090	951,330
8	1,812,660	1,452,930	1,343,500	1,233,940	1,105,110	991,270
9	1,847,250	1,491,590	1,382,460	1,273,200	1,147,990	1,029,080
10	1,879,580	1,528,370	1,419,340	1,310,190	1,187,140	1,065,330
11	1,910,040	1,563,280	1,454,540	1,345,690	1,227,740	1,098,760
12	1,938,890	1,596,460	1,488,010	1,379,460	1,264,750	1,133,650
13	1,966,140	1,628,020	1,519,940	1,411,750	1,300,000	1,165,740
14	1,991,650	1,657,980	1,550,250	1,442,420	1,333,920	1,196,340
15	2,015,710	1,686,340	1,579,250	1,472,030	1,366,240	1,226,000
16	2,038,410	1,713,350	1,606,700	1,499,910	1,396,920	1,253,930
17	2,059,920	1,738,760	1,632,660	1,526,440	1,426,420	1,280,910
18	2,079,960	1,762,720	1,657,370	1,551,890	1,454,320	1,306,820
19	2,099,050	1,785,860	1,681,000	1,576,010	1,480,860	1,331,660
20	2,116,820	1,807,790	1,703,480	1,599,060	1,506,320	1,355,140
21	2,134,050	1,828,400	1,724,780	1,621,050	1,530,460	1,377,840
22		1,848,990	1,745,720	1,642,350	1,553,660	1,399,600
23		1,866,780	1,764,550	1,662,190	1,575,640	1,420,550
24					1,596,830	1,440,560
25					1,616,820	1,459,760
26					1,635,990	1,477,900
27						1,495,630

[별표2]

승진시 호봉획정표

낫랫똥 삿 ㅍ	낫랫삿 삿 ㅍ	낫랫똥 삿 ㅍ	낫랫삿 삿 ㅍ	낫랫똥 삿 ㅍ	낫랫삿 삿 ㅍ
1	1	12	11	23	22
2	1	13	12	24	23
3	2	14	13	25	24
4	3	15	14	26	25
5	4	16	15	27	26
6	5	17	16	28	27
7	6	18	17	29	28
8	7	19	18	30	29
9	8	20	19	31	30
10	9	21	20	32	31
11	10	22	21		

[별표3]<신설 2013.07.18.>

가족수당, 가족수당가산금의 감액지급기준표

구분	정 직기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의 기간 중	감봉기간 중	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 중			
			봉급의 80퍼센트(연봉월액의 7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70퍼센트(연봉월액의 6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50퍼센트(연봉월액의 4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연봉월액) 미지급
감액할 금액	수당액의 2/3	수당액의 1/3	수당액의 20퍼센트	수당액의 30퍼센트	수당액의 50퍼센트	수당 전액

[별표4]<개정 2013.07.18.>

시간외 · 야간 · 휴일 근무 수당 지급 기준표

(단위:원)

구 분	적용기준	금 액	비 고
시간외 근무	사전 승인을 득한 초과 근무시	통상임금의 150%	실근무시간 기준
야 간 근무	22:00~익일 06:00사이 근무시	통상임금의 150%	
휴 일 근무	휴일에 근무하는 직원	통상임금의 150%	

[별표5]<개정 2013.07.18.>

교통보조비 지급 기준표

(단위:원)

구 분	직 급	금 액	비 고
일반직	1급	170,000	
	2급	160,000	
	3급	150,000	
	4급	140,000	
	5급	130,000	
	6급	120,000	

[별표6]<개정 2013.07.18.>

직책급업무추진비지급기준

(단위:원)

구분	직급	금액	비고
일반직	1급	300,000	
	2급	100,000	
	3급	100,000	
	4급	50,000	

[별표7]<신설 2013.07.18.>

직급보조비지급기준

(단위:원)

구분	직급	금액	비고
일반직	1급	300,000	
	2급	250,000	
	3급	200,000	
	4급	150,000	
	5급	130,000	
	6급	100,000	

[별표8]<개정 2013.07.18.>

기 술 수 당 지 급 기 준 표

(단위:원)

구 분	보일러관련 국가공인자격 (보일러조정자 선임시)	가스관련 국가공인 자격 (가스안전관리자 선임시)
금 액	50,000	50,000

[별표9]<신설 2013.07.18.>

청 소 년 활 동 수 당 지 급 기 준

(단위:원)

구 분	직 급	금 액	비 고
일반직	1급	350,000	
	2급	300,000	
	3급	250,000	
	4급	200,000	
	5급	150,000	
	6급	100,000	
계약직	계약직	100,000	

[별표10]<신설 2013.07.18.>

장 기 근 속 수 당 지 급 기 준

(단위:원)

근무경력	금 액	비 고
5년 이상 10년 미만	50,000	
15년 미만	60,000	
20년 미만	80,000	
20년 이상	100,000	

[별표11]<개정 2013.07.18.>

연 봉 한 계 액

(단위:원)

구분	가	나	다	라	마	바
월급여	1,991,920	1,867,910	1,698,100	1,576,330	1,417,690	1,331,680
연봉액	23,903,040	22,414,920	20,377,200	18,915,960	17,012,280	15,980,160